

개정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중소기업청은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벤처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1.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범위를 산업자원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함.
2. 벤처기업의 혁신능력과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을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토록 하고,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3. 벤처기업의 확인요청일전 6개월이상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연간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상 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술의 구체적인 범의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확인요건을 변경함.

4.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대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등을 추가함.
6.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존 1천500제곱미터에서 1천200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기존 산업자원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집적시설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기존규정을 보완함.
7.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원활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처 차관과 병무청장을 추가함.
8.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하고, 벤처기업 확인취소의 3개월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정책동향

산자부, '벤처사관학교' 10곳에 세운다

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벤처인력 인큐베이팅센터'가 2005년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설립된다. 이들 센터는 3년간 6500여 명의 벤처인력을 배출할 방침이어서 지방 벤처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회범) 주관으로 벤처기업에 특화된 경영교육기관인 '벤처인력 인큐베이팅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는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우선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경기·인천·충남·전남·경북·대구·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이어 2005년까지 설치 지역을 10개로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향후 3년간 정부예산 28억원과 민간부담 19억원을 포함해 총 47억 6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 주관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를 비롯해 전국 5개 테크노파크, 호서대학교, 아주대 사이버MBA,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중윤 기자 jykim@etnews.co.kr>

출처 : 전자신문, 2002/08/30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독려

1999년 1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 위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감리시스템'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 통계기법과 심리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실현하고 있는 종합감리시스템은 최첨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상매매 적출기준을 지속적으로 평가·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상매매 적출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자동적출시스템(ADS: Advance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예방기능을 발휘할 예정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증권사는 절반수준이며 이중고가, 허수, 분할주문 등 기본적인 감시화면을 갖춘 회사는 9개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도입회사가 조속히 확대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증권업협회(02-767-2600)